

2026년 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 지원 공고

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컨설팅을 통해 경영진단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경영 문제해결 및 위기극복을 위해 「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 지원」 사업을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3월 5일
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

□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

-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**소상공인**

■ 소상공인 : 아래의 기준을 모두 (①+②) 충족하는 자([별표 1] 소상공인 기준 참고)

- ①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

○ 지원내용

-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재도약 **컨설팅 지원**
-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(컨설팅 1일 1회, 4시간 기준)
- 업체당 1회~3회 지원

(사업 담당자 및 컨설턴트 사전 진단 후, 컨설팅 지원횟수 최종 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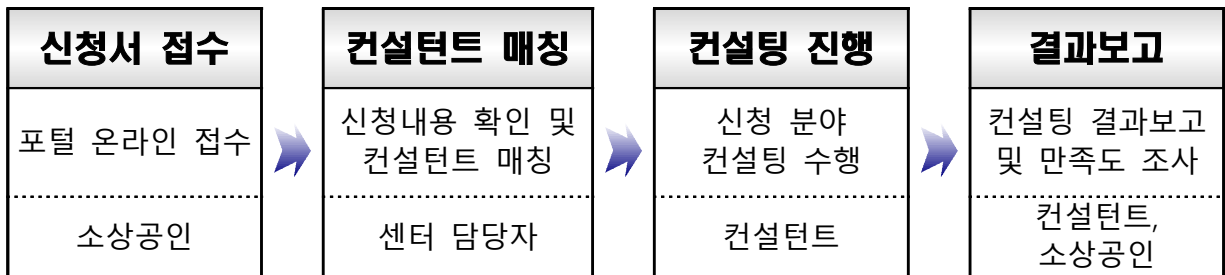
※ **컨설팅 3회** 수료업체는 「**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**」 및 「**2026년 소상공인 특색간판**」 지원 신청 시 **가점 부여**

□ 지원 분야

분야	세부내용
경영일반	홍보, 마케팅, 손익분석, 고객관리, 프랜차이즈 등
온라인마케팅	스마트스토어, 네이버 플레이스, SNS온라인마케팅 등
매장연출	VMD, 상품 진열, 매장 내 설치물 배치 등
기술전수	음식점, 카페, 미용실 등 업종별 전문기술 전수 등
세무지도	절세방법, 세무처리 등
노무지도	노사분쟁, 근로계약 등
지식재산권지도	실용신안, 상표, 특허 등

※ 7가지 지원 분야 중, 한 가지 분야만 선택 필수(컨설팅 신청 시 선택)

□ 지원절차



□ 신청 · 접수

○ 신청 기간 : 2026. 3. 5. 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

※ 연중 상시 신청.접수, 상시 컨설팅 진행

○ 신청방법

-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 포털(www.icsp.or.kr) 접속 후 > 사업신청 > 온라인 접수 > 「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 지원」 신청
- 개별신청 원칙(대리접수 불가)

○ 유의사항

- 컨설팅 신청 후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**3주 내 컨설턴트 미매칭 시** 및 컨설턴트 매칭 후 **3주 내 컨설팅 협약 미진행 시** 컨설팅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.

- 제출서류 (①~②번: 포털 온라인 작성, ③번: 서류 발급 후 온라인 첨부)

제출서류
① 재도약 컨설팅 지원 신청서 [온라인 작성]
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 [온라인 작성]
③ 사업자등록증명 ※ 공고일(3.5일) 이후 발급분 - 발급처: 온라인(정부24, 홈택스), 오프라인(무인발급기, 관할 세무서) ▶참고 링크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2100000016

지원제외 대상 (※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, 지원대상에서 제외)

-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
-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
-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,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
-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-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
- 당해 연도 센터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
-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, 단체 또는 조합
- 국고 및 시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(ex. 장기요양 수행기관 등)

문의처

-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생애주기지원팀 ☎032)715-4047

별표 1

소상공인 기준(상시 근로자수,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②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(제조업은 중분류) 기준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표 2

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